

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 지침

제정 2015. 7. 29
1차 개정 2015.11. 06

제3조(외국어능력기준)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각 학과별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학능력기준을 충족하고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2.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되, 적용기준은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부초청 장학생,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아래의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.

가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 이상

나. 영어능력시험 TOEFL(PBT 550, CBT 210, iBT 80) 이상

다. TEPS 550점 이상

라. TOEIC 650점 이상

마. IELTS 5.5점 이상

3. 학과별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기준의 내용 중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영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, 학과별 시행세칙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.

가. 본교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영어강좌 이수기준: 해당 영어강좌(영어회화, 토익, 토플) 중 어느 하나의 강좌를 선택하여 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,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.

나. 본교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제2외국어(중국어, 일본어, 프랑스어)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

다.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

라.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센터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

4. **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**하며,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.

5.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학과, 동일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학과별 시행세칙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적용이 다른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.

-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은 외국어인정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. 다만,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